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The Effect and Policy Implications of Family Changes on Elderly Care

1. 가족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

본고는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양상과 그러한 가족변화가 갖는 파급효과를 노인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변화양상을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용성(availabilit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화와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칠 문화적 선호(desirability)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제 측면에서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의 외형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변화가 동일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지향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만이 가족변화가 노인부양에 있어 갖는 의미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가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가 노인부양의 문제를 사적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



鄭 京 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비하여 의존적 가족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적부양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는 노인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가족에게 요구되는 부양의 정도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족변화가 구체적인 노인부양의 제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공적 부양체계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족변화 양상

1) 노인부양 가용성(avail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가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인구학적 변화는 출산력의 저하이다. 출산력은 1980년도의 2.8에서 20년 후인 2000년에는 1.5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저하하였다. 이러한 출산력의 저하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대로 이어져 1980년에는 3.8%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0년에는 7.2%로 UN이 정한 기준에 의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통계청의 최근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9년에는 14.4%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때 출산력은 1.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망력의 증대는 평균수명의 증대로 이어져 후기노인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편, 출산력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존자녀의 수로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지만, 30~40대는 2명 내외의 자녀를 갖고 있어 출산력의 저하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라고 하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현격한 연령층별 자녀수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현 노인세대들은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자녀가 충분하지만 미래의 노인세대들은 자녀수가 매우 적어 인구학적 가용성의 저하를 경험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자녀가 있더라도 모두 부양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주요한 노인부양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실제 부양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인구학적 가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대해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표 1. 인구학적 변화

구 분	1980	1990	2000	2019	2026
합계출산율(명) ^{a)}	2.8	1.6	1.5	1.4 ²⁾	1.4 ²⁾
평균수명 ^{1)b)}					
남자(세)	62.3	67.7	72.1	77.5	78.0
여자(세)	70.5	75.9	79.5	84.1	84.5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b)}	3.8	5.1	7.2	14.4	20.0
75세 이상 인구 구성비(% ^{b)}	1.1	1.6	2.3	6.2	7.7
노년부양비 ^{b)}	6.1	7.4	10.1	20.2	29.7

주: 1) 1981, 1991, 2000년 자료임.

2) 장래인구추계시 중위추계 가정

자료: a) 통계청, 『2001 한국의 사회지표』, 2001.

b) _____, 『장래인구추계』, 2001.

표 2. 연령군별 현존자녀수

(단위: 명)

연령군 ^{a)}	자녀수	연령군 ^{b)}	자녀수
15~24세	0.8	65~69세	4.14
25~29세	1.1	70~74세	4.44
30~34세	1.7	75~79세	4.71
35~39세	2.0	80세 이상	4.39
40~44세	2.1		

자료: a)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

b) 선우덕 외,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1.

표 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1980	1990	2000
전 체	59.0	60.0	60.7
여 성	42.8	47.0	48.3
미 혼	50.8	46.5	47.0
기 혼	40.0	47.2	48.7
남 성	73.6	74.0	7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 연도.

노인부양의 문제를
사적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 비하여
의존적 가족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적부양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는 노인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가족에게 요구되는
부양의 정도를 저하시킨다

2) 노부모 부양의지(willingness)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화

노후관 및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연령군별로 비교하여 보면 노인들의 독립성 추구가 강화되고 노부모 부양의지가 약화될 것임이 예견된다. 1998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경우는 32.3%가 동거부양을, 20.2%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만 별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노인이 43.2%이다. 반면 25~34세 연령군의 경우는 절대다수인 83.1%가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즉, 현 노인세대의 절반 정도가 이미 자녀세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4. 연령군별 선호하는 노후 부양방법

(단위: %, 명)

특성	동거부양	별거부양	독립생활	생각해 본 적 없음	계
25~34세	5.7	5.5	83.1	5.7	100.0(2,494)
35~44세	9.5	5.8	78.6	6.1	100.0(2,422)
45~54세	16.6	9.1	68.8	5.5	100.0(1,547)
55~64세	29.4	13.5	52.8	4.4	100.0(1,335)
65세 이상	32.3	20.2	43.2	4.4	100.0(9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양과 신체적인 부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부양의 경우 현 노인세대의 약 1/4은 가족·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만, 20·30·40대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가 신체적 부양의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약화되어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하여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5~34세 연령군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종류별로 30~50%의 이용희망을

표 5. 노후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특성	스스로	가족·자녀	국가적 지원	기타	모르겠다	계(명)
25~34세	71.4	1.7	25.7	0.0	1.3	100.0(2,491)
35~44세	69.9	1.7	26.6	0.1	1.7	100.0(2,422)
45~54세	68.9	6.3	21.9	0.0	2.9	100.0(1,548)
55~64세	58.2	16.8	22.2	0.0	2.8	100.0(1,335)
65세 이상	42.5	26.2	28.6	0.0	2.7	100.0(9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표 6.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단위: %)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정봉사원 서비스	50.8	49.3	36.3	31.7	30.1
주간보호시설	29.1	27.2	24.8	19.7	21.3
단기보호시설	32.3	31.5	25.9	18.7	20.3
시설서비스(양로/요양시설)	67.0	60.5	46.3	33.2	2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용희망률도 6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65세 연령군의 20~30% 수준의 재가서비스 이용희망률과 28.1%의 시설이용희망률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도에 실시한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수발을 하고 있는 가족수발자가 응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족성원이 책임을 지고 수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수발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노후관 및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연령군별로 비교하여 보면 노인들의 독립성 추구가 강화되고 노부모 부양의지가 약화될 것임이 예견된다.

표 7. 수발자의 연령별 부모 수발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전적으로 가족성원이 책임지고 수발	수발서비스를 이용 하여 가족이 수발	와상시 노인 요양원 입소	수발필요 상태시 노인요양원 입소	계(명)
29세 이하	54.0	24.0	18.0	4.0	100.0 (50)
30~39세	54.4	17.6	24.8	3.2	100.0 (125)
40~49세	57.7	16.2	22.1	4.1	100.0 (222)
50~59세	61.1	10.3	24.0	4.6	100.0 (175)
60세 이상	67.4	10.1	17.6	4.9	100.0 (426)

자료: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2001.

3. 노부모부양 행위의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1) 자녀와의 동거

거주형태는 가족부양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자녀의 구체적인 부양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신체적·정서적인 부양이 가장 확실하게 수행될 수 있지만 사생활의 침해와 정서적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¹⁾. 반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정서적인 부양능력은 그리 크게 저하되지 않지만 신체적 부양기능은 매우 약화되어, 사생활 침해나 정서적 갈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46.4%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젊은 세대들만이 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어 단독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feasibility)만 된다면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자녀별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즉, 공적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일차적인

1)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며느리들은 '시부모와의 동거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일이다', '남편이나 아이들과 오붓하게 즐길 수 없다', '내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점들을 동거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한경혜·이정화, 「부양의식, 형제자매 지원과 노부모 동거에 대한 혜택-비용 지각」, 『대학가정학회지』, 제39권 제11호, 2001, pp.129~43).

표 8. 거주형태별 기능과 역기능의 크기

거주형태	기능: 부양의 측면			역기능	
	경제적 원조	신변 케어	정서적 원조	사생활의 침해	정서적 갈등의 현재화
동거	○	○	○	●	●
근거 별거	○	○	○	●	●
원거 별거	○	●	○	●	●

자료: 森岡清美・望月嵩 편, 『새로운 가족사회학』, 培風館, 1988, p.125에서 재인용

부양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가 적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은 저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인 선호나 인구학적 가용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노인의 자녀별거 현상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혼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하에서의 한 생존전략으로 정서적 갈등의 가능성과 사생활의 희생을 각오하고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다²⁾.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속도에 따라서 자녀별거의 증가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인 선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거에 대한 선호는 매우 저하될 것이지만 ‘국이 식지 않을 거리’에 거주하는 수정확대가족의 증가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한 사생활 확보 욕구와 동시에 부모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확대가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속도에 따라서 자녀별거의 증가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문화적인 선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정확대가족의 증가 가능성이 크다.

2) 이현송 외(1996)의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의 부모동거율은 16.6%로 미취업여성의 13.0%보다 높고, 수정확대가족의 비율도 14.9%로 미취업여성의 10.4%보다 높다.

2) 경제적 부양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의 제공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69.2%가 생활비를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으며, 경제적 부양제공자의 대부분이 자녀들이다. 이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다고 하는 구조적 요인을 생각해 볼 때 예견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거주형태별로 부양제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동거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양 가능성의 차이는 적지만, 실제로는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동거의 경우 경제적인 부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90.1%이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경제적 부양률이 각각 54.9%와 45.1%이다.

노인부부의 경우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비율이 46.5%로 자녀동거노인의 46.8%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60.3%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기혼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수준이 매우 낮고, 29.7%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필요한 경제적 부양이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자녀동거노인이나 부부노인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독거노인은 적절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세대 노인들의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만 점차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 현세대 노인들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시기에 청장년시기를 보냈고 경제적 자원을 자녀를 위해 모두 소진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안된 세대인 반면, 미래의 노인세대는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립에 따라서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998년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며 현 노인세대의 경우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22.6%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미래의 노인이 될 45~64세 연령군은 40% 정도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 노인들의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 저하와 더불어 자녀세대의 노부모 경제적 부양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의 경제적 부양의 충족성은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립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경로연금제도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양

표 9. 가구형태별 경제적 부양률 및 부양자¹⁾

(단위: %)

구분	전체 ²⁾	자녀동거	자녀비동거	
			노인독신	노인부부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비율	49.9	46.8	60.3	46.5
생활비 보조율	69.2	90.1	54.9	45.1
보조자 ³⁾				
장남 · 며느리	64.0	65.7	49.9	72.0
그 외의 아들 · 며느리	44.0	43.2	34.4	55.4
딸 · 사위	46.0	42.9	48.1	55.7
미혼자녀	9.2	13.3	1.6	3.0
손자녀 · 배우자	4.0	4.1	1.7	0.0
부모	0.3	0.2	0.3	0.0
형제 · 자매	0.3	0.3	1.1	0.0
국가보조	9.7	4.0	29.7	12.1
그 외 친척 · 친구 · 이웃	2.1	0.8	8.3	1.1
동거인	0.5	0.2	0.3	0.0
단체	0.4	0.2	1.6	0.0
기타	0.8	0.0	2.9	1.1

주: 1) 주택비용, 식생활비, 의료 생필품비, 보건 · 의료비, 축의금 · 부조금, 여사생활 등 6가지 지출항목중 한 항목에서라도 타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가를 통하여 경제적 부양실태를 파악하였음.

2) 노인중 기타가구 5.5%를 포함한 결과임.

3) 중복응답임.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의 일차적인 보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체적 부양

노인중 신체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부양을 받는 비율이 69.6%인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부양수혜율이 높아 79.2%와 81.0%이다.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30.3%로 매우 낮다. 또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자녀동거가구의

미래 노인들의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 저하와
더불어 자녀세대의
경제적 부양역지 약화로
앞으로 노인의
경제적 부양의 충족성은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립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우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만, 동거자가 전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친구·이웃과 같은 비가족원의 의존도가 높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부양에 있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노인의 자녀동거 여부가 아니라 '혼자' 사는가 여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와의 동거율 저하에 따라서 자녀로부터의 신체적인 부양의 가능성은 저하될 것이다. 자녀에 의한 부양은 대부분 동거 또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급감하기 때문에 거주형태의 변화는 곧 자녀의 노부모 신체적 부양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선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체적 부양은 가족만의 책임으로는 간주되지 않고 가족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체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더불어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부양의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부양의 경우 배우자도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신체적 부양에 따른 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수발자의 수발로 인한 취업중단 경험률이 여성수발자의 경우 9.5%로 남자수발자 4.6%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수발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한을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부모 수발과 취업을 양립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관적인 수발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여성을 신체적 수발의 주담당자로 간주하는 정책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자녀의 신체적 부양의지의 약화와 신체적 수발의 주담당자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라고 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공급이 급속히 증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집단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일차적으로는 독거노인이,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를 수발하는 노인이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가구형태별 신체적 부양률 및 부양자¹⁾

(단위: %)

구 분	전체 ²⁾	자녀동거	자녀비동거	
			노인독신	노인부부
부양수혜율	69.6	79.2	30.3	81.0
부양자 ³⁾				
배우자	37.7	20.7	0.0	98.0
장남·며느리	32.8	46.8	29.4	4.9
그 외의 아들·며느리	21.2	30.6	7.8	5.6
딸·사위	18.7	20.8	29.9	10.3
미혼자녀	7.4	10.6	0.0	0.0
손자녀·배우자	13.7	17.3	0.0	0.0
형제·자매	0.8	0.0	8.6	0.0
기타 친척	0.5	0.0	5.1	0.0
친구·이웃	8.6	0.0	45.1	3.7
가정봉사원	0.5	0.0	5.3	0.0
파출부	0.6	1.0	0.0	0.0
종교단체 관계자	0.2	0.0	2.4	0.0
사회복지사	0.0	0.0	0.0	0.0
기타	1.6	0.0	6.2	0.0

주: 1) 일상생활수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수발여부를 통하여 신체적 부양을 파악하였음.

2) 노인중 기타가구 5.5%를 포함한 결과임.

3) 중복응답임.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자녀의 신체적 부양인지 약화와
신체적 수발의 주담당자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라고 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이
증대되어야 한다.

4) 정서적 부양

노인의 77.6%가 정서적인 부양을 받고 있어 경제적 부양이나 신체적 부양에 비하여 높은 부양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77.7%로 노인부부가구의 84.2%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독거노인의 경우는 67.9%로 차이가 있다. 한편, 자녀동거 여부에 따른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부양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는 친구·이웃으로부터의 정서적 부양이 매우 활발

하다.

따라서 거주형태의 변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수준의 저하는 경제적 및 신체적 부양에 비하여 정서적 부양의 경우 가족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적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세대간의 관계는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나 기능적인 교환관계가 아니라 애정관계에 기초한 감정적 유대가 더 중요한 측면으로 대두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대관계가 '의무감'에 기초한 것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관계로 변화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독거노인의 경우 친구 및 이웃이 갖는 중요성이 크므로 지역사회가 독거하는 노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준가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들 독거노인들을 위한 우애서비스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11. 가구형태별 정서적 부양률 및 부양자¹⁾

(단위: %)

구 분	전체 ²⁾	자녀동거	자녀비동거	
			노인독신	노인부부
부양수혜율	77.6	77.7	67.9	84.2
부양자 ³⁾				
배우자	41.1	31.4	1.5	78.6
장남 · 며느리	44.3	47.5	38.6	43.0
그 외의 아들 · 며느리	29.6	32.4	24.4	27.8
딸 · 사위	36.2	39.1	42.8	29.0
미혼자녀	5.3	9.2	1.7	2.1
손자녀 · 배우자	2.2	2.2	1.6	0.6
부모	0.1	0.1	0.0	0.2
형제 · 자매	5.0	3.3	9.5	5.2
기타 친척	6.1	4.5	12.2	5.7
친구 · 이웃	39.2	37.6	56.5	31.7
가정봉사원	0.4	0.3	0.9	0.4
종교단체관계자	3.3	3.0	7.6	1.7
사회복지사	0.2	0.0	1.0	0.2
동거인	0.3	0.0	0.0	0.2
기타	0.1	0.0	0.2	0.2

주: 1) 걱정거리나 문제가 있을 때 의논상대가 있는가를 통하여 정서적 부양실태를 파악하였음.

2) 노인중 기타가구 5.5%를 포함한 결과임.

3) 중복응답임.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